

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7. 18.(수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⑥ 의결사항

가.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 - (2012-40-145)

-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54명 중 44명과 한국방송공사 이사 지원자 97명 중 56명을 방송법 제48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대상자로 정하기로 의결함
- 아울러,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과 KBS 이사 추천은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하기로 함

나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-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31개사 - (2012-40-146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17조에 의거, '12.7.31 ~ '12.12.31일 중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① 허가유효기간 :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등 26개사*는 2017.7.31일까지로 하고,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(주) 등 5개사**는 3년으로 함

* (주)티브로드ABC방송, (주)티브로드한빛방송, (주)티브로드기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은평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금호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, (주)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엠비광주방송전남지점, 대구케이블방송(주), (주)한국케이블TV나라방송, (주)아름방송네트워크, (주)서경방송 (26개사)

**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(주), (주)씨씨에스충북방송, 금강방송주식회사, (주)충청방송, (주)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(5개사)

② 재허가 조건

사업자명	재허가 조건
공 통 (31개사)	◦ 디지털전환율(당해년도 6월말 기준)에 따라 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~28% 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. - 디지털전환율 10%미만 : PP프로그램사용료 25% 이상 지급 - 디지털전환율 10%이상 ~ 30%미만 : PP프로그램사용료 26% 이상 지급 - 디지털전환율 30%이상 ~ 50%미만 : PP프로그램사용료 27% 이상 지급 - 디지털전환율 50%이상 : PP프로그램사용료 28%이상 지급 ◦ 매 반기별 PP프로그램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◦ 디지털전환을 위해 시설투자 등 관련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

	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공통 (MSO 계열 21개사* 및 (주)아름 방송네트워크)	◦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PP 또는 타SO 계열PP와 그러하지 아니한 PP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.
공통 (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13개사**)	◦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제도 운영계획을 2012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고, 그 구성을 2012년 12월 31일(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은 2013년 1월 15일)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씨앤엠 계열 2개사 (경동, 경기 케이블티브이)	◦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 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◦ 교육훈련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(주)현대에이치씨 엔충북방송	◦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개정 전까지, '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'(법률 제11166호) 시행 전 관할구역에 따른 방송구역을 유지하여야 한다. ◦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는 가입자에 대해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고, 2014년 1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(주)씨엠비광주방송 전남지점	◦ 교육훈련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(주)	◦ 2014년 6월 30일까지 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고, 관련 경과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 또한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해 대여, 담보제공, 지급보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(주)씨씨에스 충북방송	◦ 자회사 매각 및 부채비율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그 이행경과를 매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◦ 교육훈련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◦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는 가입자에 대해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고, 2014년 1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(주)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	◦ 교육훈련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금강방송(주)	◦ 2014년 6월 30일까지 흡소평사업자에 대한 차입금을 해소하여야 하며, 관련경과를 매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재허가 기간 동안 흡소평사업자에게 추가차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. ◦ 교육훈련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(주)충청방송	◦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개정 전까지, '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'(법률 제11166호) 시행 전 관할구역에 따른 방송구역을 유지하여야 한다. ◦ 교육훈련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(주)한국케이블TV 전북방송	◦ 증자 및 부채비율 감소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그 이행경과를 매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◦ 교육훈련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 MSO계열 21개사

- 티브로드(3) : (주)티브로드ABC방송, (주)티브로드한빛방송, (주)티브로드기남방송
- 씨앤엠(2) : (주)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케이블티브이
- 씨제이헬로비전(11) :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은평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
- 현대에이치씨엔(4) : (주)현대에이치씨엔금호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
- 씨엠비(1) : (주)씨엠비광주방송전남지점

** (주)티브로드기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, (주)씨제이헬로

비전영동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,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비, (주)씨엠비광주방송전남지점, 한국
케이블TV푸른방송(주), (주)한국케이블TV나라방송, 금강방송(주), (주)서경방송, (주)충청방송, (주)한국케이블
TV전북방송 (13개사)

7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o 별도 통지기로 함

6. 폐 회 (11:05)